

특집 / 호텔화재 – 무엇이 문제인가?

● 소방관의 견해

책임있는 지도와 경영주의 의지



박 태 유
〈서울북부소방서장〉

1. 머리말

소방업무의 본질적인 목적은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소방업무의 목적달성과 보다 발전된 기술개발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소방력의 신장, 법령 및 제도의 개선과 소방시설의 설치, 방화건축의 개선, 방화관리 체제의 정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달라지지 아니한 것은 호텔화재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대형 호텔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에 발생하였던 관광호텔화재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가능한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관광호텔 현황

가. 설치내용

○서울시 관내에는 83년도 준공 개관된 「힐튼」호텔을 포함하여 총 53개의 관광호텔이 설치되어 있다(자료구입 관계로 서울시 관내의 관광호텔만 조사하였음).

○설치 연도별로 보면 1970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21개이고, 1971년부터 1980년 사이에 설치된 것이 27개소, 1981년 이후에 설치된 것이 5개소이다.

○설치된 지역별로 보면 85%에 해당되는 45개소가 한강

이북에 설치되어 있고, 15%에 해당되는 8개소가 한강 이남인 강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등급별로는 특급호텔이 14개소이고 1급호텔 17개소, 2급호텔 11개소, 3급호텔 9개소, 기타 호텔이 2개소로 구분되어 있다.

○층별로는 10층 이하인 중고층 호텔이 24개소로 45%에 해당되고, 11층이상 20층까지의 고층호텔이 23개소로 43%이고, 21층 이상인 초고층 호텔이 6개가 있어 소방업무상의 특수장소로 관리되고 있다.

○소방시설 및 인명구조 기구는 전 대상이 완비되어 있다고 한다.

○관광호텔 설치 현황

• 설치연도별

70년이 전	71~75년	76~80년	81~82년	83년이 후	계
21	14	13	4	1	53

• 등급별

특급	1급	2급	3급	기타	계
14	17	11	9	2	53

• 층별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8층	37층	계
7	17	14	9	4	1 (프레지던트)	1 (롯데)	53

나. 화재발생 상황

관광호텔의 대형화재 발생상황을 보면 1971년 12월25일에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1984년 1월14일의 부산 대아호텔 화재까지 13년간에 걸쳐 15건의 화재로 7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그중 360명이 사망하고 423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 대형 호텔 화재 발생 상황

년 월 일	호 텔	인명피해		
		계	사망	부상
71. 12. 25	서울 대연각호텔	228	165	63
72. 3. 25	〃 파레스호텔	4	4	-
72. 8. 5	〃 대왕코너 (1차)	85	5	80
74. 10. 17	〃 뉴남산호텔	69	19	50
74. 11. 3	〃 대왕코너 (2차)	123	88	35
74. 12. 23	〃 동방호텔	8	6	2
75. 4. 2	〃 광화문호텔	8	3	5
75. 10. 12	〃 대왕코너 (3차)	3		3
78. 4. 16	〃 라이온스호텔(1차)	7	1	6
79. 1. 8	〃 뉴타운호텔	10	3	7
79. 2. 7	〃 뉴서울호텔	8	2	6
79. 4. 22	〃 라이온스호텔(2차)	33	5	28
82. 12. 29	대구 금호관광호텔	33	10	23
83. 10. 2	마산 고려호텔	46	8	38
84. 1. 14	부산 대아호텔	118	38	80
계		15 건	783명	360명
				423명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년 4월22일 서울 라이온스호텔의 2차화재 사고를 끝으로 5년이 경과하도록 서울시내에서는 대형 호텔화재가 발생되지 아니한 반면 그 외의 도시에서는 82년에 1건, 83년에 1건, 84년에 1건씩의 화재로 19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이온스호텔의 2차 화재사건 이후 서울시 관내의 모든 관광호텔과 고층건물, 그리고 무도유홍음식점 등에대한 소방 및 건축구조적인 미비시설의 완비 촉진(특히 기연성 내재재의 불연화와 방화구획)을 위하여 오늘 현재까지 계속되는 노력을 경주해왔을 뿐 아니라 중요 행사기간중이거나 각종 경계근무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마다 모든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던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관광호텔은 연중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관계로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일 건물내에 식당, 다방, 나이트크럽, 매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항시 화재의 발생과 연소확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러한 문제요인을 찾아내어 분석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호텔화재로 인하여 적출된 문제점

수 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형공장화재보다도 관광호텔의 화재사고가 더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한 인명피해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하여 검토되었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되고 있다.

- 가. 건축구조적인 결함사항이 있다.
- 나. 소방시설이 미비되었거나 유지관리가 부실하였다.
- 다. 종사원들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여 초기소화 및 인명 안전대피 유도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 라. 경영주가 소방안전에 무관심 하여 불안전 시설의 개수를 태만히 하였다.
- 마. 관계 공무원들이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적내용을 뒷받침이나 하듯이 1984년 1월 14일에 발생한 부산 대아호텔 화재사건의 취재기자 방담을 실은 1984년 1월16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의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 몰상식이 자초한 대아호텔 화재

○ 탈출로 비상계단이 연통역할

○ 내장재 등 인화성 투성이에다 정면 창문 막아 소음방지

○ 비상벨 안울려 투숙객은 발화 1시간 후 알기도

○ 옥상 오르는 문 안열려 10명이 한곳에 몰려 질식사라고 하였고 그 외에도 호텔 구조 역시 긴 꺾쇄형으로 당초 건물을 지을 때는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다 길이 50미터, 폭 18미터 쯤의 대지에 지어 정·후문만 도로와 접해 있을 뿐, 객실들이 있는 건물 양옆쪽으로는 소방차나 인명구조용 고가사다리차도 접근할 수 없는 처지여서 인명피해가 컸다고 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위 여건이 소방 활동상 위약한 호텔은 서울시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 이외에도 안전상 필요한 시설이 다 갖추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개관하려는 성급한 경영주의 입장 때문에 유도등, 유도표지, 내장재의 불연화, 소방기구의 비치 등 완벽하지 못한 마무리작업과 종업원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마치지 아니한 상황에서 개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의 방화관리는 경영주의 관심권 밖의 문제로 소외되어 버리는 것이 상례처럼 되어 있고, 기존호텔 건물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불안전한 시설의 개수명령을 받고도 시설개수를 태만히 하였거나 아예 기피해 버린 경영주의 무관심 때문에 대형사고를 유발케 하였다는 경우도 있었다.

화재예방과 진압 실무면에서 보았을 때 호텔 용도의 건

물을 고층의 제한없이 초고층화 하는 점과 지하 심층부나 중간층에서 LPG 또는 석유 등을 제한없이 연료로 사용하는 식당·다방과 같은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화재발생시 인명안전 및 연소확대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후한 것이므로 방재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었으면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부대시설이나 종업원 숙소 등의 부분에 대하여 중앙 난방시설의 공급을 제한하고 직화(直火)에 의한 난방용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절대로 금지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4. 호텔화재 예방을 위한 제안

가장 완벽한 예방대책은 기연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실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기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불씨의 접근을 없애도록 하여 연소조건을 억제해 버리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호텔 영업은 타업종에 비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취약요인을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별 소방대상물로 선정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잇따라 대형 호텔화재는 거의 연례적으로 발생되어 왔으며 그때마다 노출되었던 문제점들은 거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호텔화재 예방을 위한 소견을 제안코자 한다.

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1) 방연을 위한 충간 구획

각종 계단, 닥트 등 상층과 관통되는 부분은 방연구획화 함으로써 고층건물 화재시 연기의 수직 확산을 억제하고 연기에 의하여 질식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2) 특별 피난계단 구조 보완

고층건물 화재시 발화층 이외의 어느 층에서라도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지층까지 피난이 가능하도록 조명, 배연, 표지, 방송설비 등의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3) 긴급피난 가능한 설비 및 기구 확보

어느 층에서도 건물 밖으로 탈출이 가능한 창문의 설치와 미로화되지 않은 복도가 창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객실을 배치하고, 각 복도의 적당한 곳에 투숙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산소호흡기·방열복·구조대·출사다리·완강기 등 해당되는 피난기구를 비치하도록 하고, 각 객실별로는 인명구조용 기구를 상비하여 유사시 신속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발연성 물질의 방염화

카페트·커텐 등 발연계수가 높은 섬유제품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메트레스, 모포, 시

트 등의 침구와 가구제품에 이르기까지 방염성능이 많은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됨으로써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소방시설의 완비 및 유지관리 방안

1) 방화관리 업무의 전문화

방화관리처의 타업무 겸직을 억제하며 전담업무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된 호텔에 있어서는 같은 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상 전문기술·능력을 갖춘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해당류의 1급기사·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책임점검을 하게 함으로써 방화관리업무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2) 경영주의 소방안전에 관한 관심 유도

소방·건축·위생·전기·가스 등 호텔의 방재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을 평가기준으로 한 “표지제도”를 실시하여 안전시설 표지가 없는 호텔은 안전상 위험요인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경영주로 하여금 방재시설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부대설비의 용도제한

호텔화재 요인으로 가장 취약성이 많은 나이트클럽·사우나·다방·식당·아케이드 등을 설치할 때에는 위치 선정에 유의하도록 하고 이동식 직화사용 난방시설의 제한은 물론 기연성 내장시설, 불안전한 통로시설, 종업원에 대한 통제 등 화재예방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점들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강력하게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말이나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구조·설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하는 각종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 일과 모든 종업원들이 유사시에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라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일들이 경영주의 관심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여야 할 사람이 지켜주지 않을 때에는 사후야방문이 되고 마는 것처럼 사고 후에 문제점이나 대책을 논하기에 앞서 행정기관의 책임있는 행정지도 감독과 이를 이행하려는 경영주의 의지가 합하여졌을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예방대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호텔화재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